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 품목분류표가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바, 이를 인용하여 관세부과 대상을 정하고 있는 4개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을 개정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1. 12. 13. ~ 12.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안

제1조(「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의 개정)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412.39.9000호, 제4412.99.6100호 또는
제4412.99.9100호”를 “제4412.39.9000호 또는 제4412.99.1000호”로 한
다.

제2조(「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의 개
정)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4412.39호”를 “제4412.39호, 제4412.91호, 제4412.92호”로
한다.

제3조(「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
세 부과에 관한 규칙」의 개정)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
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701.30.9100호”를 “제3701.30.2000호”로 한다.

제4조(「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의 개정)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4810.14.1000호”를 “제4810.14.0000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